

「국도건설공사 연계 통신·전력관로 공동 매설」 업 무 협 약 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이라 한다)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전력공사』 (이하 '공동협의체'라 한다)는 부산국토청이 수행하는 국도건설공사와 연계한 통신(전력)관로 공동매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의 목적은 부산국토청 소관 국도건설공사와 연계하여 공동협의체가 통신·전력관로를 공동매설하여 도로 이중굴착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원활히 협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 분야)

부산국토청 및 공동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1. 국도건설공사와 연계 통신(전력) 관로를 공동 매설하여 이중 굴착 사전 방지를 위하여 협력
2. 국도건설공사 구간에 통신 장애지역이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전 설비 설치에 상호 협력
3. 부산국토청에서 ITS 등 공익 목적으로 기 매설된 관로 사용이 필요할 경우 통신사업자 관로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상호 협력
4. 국도건설공사 진행상황 및 신규공사가 확정된 경우 관련 자료 공유

제3조(추진 방법)

부산국토청과 공동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관로 공동매설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추진한다.

1. 부산국토청은 국도건설공사 진행상황 및 신규공사가 확정된 경우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동협의체에 제공한다.
2. 공동협의체는 부산국토청에서 제공한 국도건설공사 구간의 정보를 활용, 관로 공동매설 방안을 부산국토청에 제출하여 이중 굴착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공동협의체는 관로 공동 매설 계획을 공동협의체 외 사업자에 사전 공개(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및 통신망 공동구축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일간지 게재)하는 등 공동매설 참여 사업자를 사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공동협의체는 미참여 사업자가 통신사업자 관로 사용 신청 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차 계약 시 점용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임차료를 과대하게 징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5. 공동협의체는 기 설치된 통신사업자 관로 일부를 부산국토청이 ITS, 터널통합관리를 위한 통신관로, 가로등 전력관로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공동협의체는 국도건설공사 구간에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통신사업자 관련 설비 제공에 적극 노력한다.

제4조(기타사항)

1.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2. 본 협약에 이견이 있을 경우 협약 기간 내 상호간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다.

2018년 5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 동 협 의 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장 [인]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장 [인]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인]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장 [인]